

공사입찰설명서(긴급)

- 입찰공고번호 : 20260818-N10-01
- 공 고 명 :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창고 신축공사
- 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043-261-2046)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043-261-2058)



충북대학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60818-N10-01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사칭하여 입찰 보증금 편취, 물품대납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찰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1.1. 수요기관 : 충북대학교
- 1.2. 공 사 명 :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창고 신축공사
- 1.3.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착공예정일 '26. 9. 4.)
 - 1.4.1. 이 공사의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1.5. 공사내용
 - 1.5.1. 주업부분야 : 건축공사업
- 1.6. 추정금액: 645,383,000원 [(추정가) 528,970,000원 + (부가세) 52,897,000원 + (도급자관급) 63,516,000원]

※ 관급자관급: 22,690,000원

-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액=기초금액=공사금액)
건축공사업	645,383,000원	581,867,000원

-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낙찰하한율: 89.745%

-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축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 실시

2.2. (삭제)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 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 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비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7.1. 입찰참가신청
 -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7.2. 입찰보증금
 -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7.2.5. 납부장소 : 충북대학교 재무과
- 7.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7.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9. 10:00 ~ 8. 25. 10:00**
 -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9.1. 개찰일시 : **2026. 8. 25 11:00**
-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16.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
-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 관련지참: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7. 기타사항

- 17.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할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계 약 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계 약 명)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6】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계 약 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계약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 · 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 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 ①
-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 ①
-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상)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인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 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	○	○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	----	--	----------	--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를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